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항, 별표 3

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88호(2020.1.8.)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및 협조 요청」

3. 위 호와 관련, 소득 구간별 상한액 기준금액 개정 및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으니 귀 협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 201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1~5분위까지 상한액 자동 적용

나. 적용기간: 2020.1.1. ~ 2020.12.31.(진료일 기준)

다. 공단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게시 예정

- 붙임 1.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통보(복지부 문서 사본) 1부.  
2.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부. 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주임

박새미

팀장

조순자

부장

전결 1/16

박강희

## 협조자

시행 의료비지원부-496

(2020.1.19.) 접수

( )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1층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nhis.or.kr>

전화 033-736-4638

전송 033-749-9605

/ [saemi1671@nhis.or.kr](mailto:saemi1671@nhis.or.kr)

/ 공개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료비지원부장)  
(경유)

제목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및 협조 요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019년)을 반영한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민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금액단위 : 만 원)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9년	81	101	152	280	350	430	580
요양병원 120일초과입원	125	157	211				
2020년	81	101	152	281	351	431	582
요양병원 120일초과입원	125	157	211				

\* 2019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4% 상승 적용('19.12.31. 통계청). 끝.



주무관 정윤식 서기관 노옥균 의료보장관리 과장 고흥우 의료보장심의 전결 2020.1.8. 관 최종균

협조자

시행 의료보장관리과-88 (2020. 1. 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 http://www.mohw.go.kr  
국 의료보장관리과

전화번호 044-202-2685 팩스번호 044-202-3983 / bon306@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 201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1~5분위까지 상한액 차등 적용

##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9.12.31 발표): 0.4%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 4. 적용기간 : 2020.1.1.~2020.12.31.(진료일 기준)

## 5. 적용방법

-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82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2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 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1년 7월):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2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21년 8월) : '20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582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